

2000년도 고성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

(의안번호 제593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9. 11. 19

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1999. 11. 19

다. 상 정 일 자 : 1999. 11. 26

총무위원회 상정

라. 의 결 일 자 : 1999. 11. 27

총무위원회 의결

2. 조성사유

- 고성군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

3. 주요골자

- 기금조성은 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 출연
 - 매년 60,000,000원 출연
- 기금 사용은 기금조기 증식을 위하여 2001년까지 사용 억제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고성군 노인의 자립기반 구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19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매년 60,000천원을 일반회계 예산에서 적립하여 3억원의 기금이 조성될 때까지 사용을 억제하는 내용으로 본 운용계획안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
- 자금예치, 관리책임자, 자금정산 및 향후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

○ 문 : 자금운용계획 및 관리책임자 예치기간은

● 답 : 이자율이 높은 군 농협에 예치하였으며, 관리책임자는 군수, 고성군 노인회 공동관리 하고있음.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○ 1999. 11. 27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